

제 호			
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			
업체명			
소재지			
대표자		연 락 처	
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 명칭 (제품명, 품목명, 모델명)		의료제품의 분류	[] 의약품 [] 의약외품 [] 의료기기
주성분 또는 구성성분 (*의약품등만 해당)			
대상 질병 또는 상해			
지정기간			
조치 · 관리계획			
필요한 수량 (필요 시 기재)			
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.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			